

심훈학보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심훈연구소 학술지인 심훈학보에 수록할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 투고범위

- 1) 본 학술지에는 심훈 문학 전반에 관련 연구논문과 발굴 자료, 콘텐츠 등을 투고할 수 있다.
- 2) 국어국문학 관련 연구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3) 투고된 연구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3조 투고자격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본 회의 회원 및 단체로 한한다.

제4조 투고원고의 작성 및 체계

- 1) 모든 투고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 번역문 수록여부를 결정한다.
- 2) 모든 투고논문은 200자 원고지 100매内外로 작성되어야 한다. 논문의 초록은 원고지 3 매内外의 분량으로 하며, 주제어는 6개内外를 제시한다. 초록과 주제어는 영문으로도 제시하여야 한다.
- 3) 모든 투고논문은 다음의 체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필자명(소속기관 및 직위)-국문 초록-국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 제목-영문 필자명(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영문 초록-영문주제어]
- 4) 모든 투고논문은 원고 말미에 필자명, 전화번호, 주소, 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개재 시 한국연구재단 탑재를 위해 요청)를 명기한다.
- 5)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부호의 사용

- 1) 각주 및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체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저자, 「논문제목」, 「학회지명」, 호수, 학회명, 연도, 면수.
 - ② 저자, 「서명」, 출판사, 연도, 면수.단, 필요에 따라 다음의 체제도 인정한다.
 - ③ 저자, 연도, 「논문제목」, 『학회지명』, 호수, 학회명, 면수.
 - ④ 저자, 연도, 『서명』, 출판사, 면수.
- 2) 각종 부호의 사용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책: (자판 입력)겹낫표(『』)
작품: (자판 입력)낫표('')

전문용어: (자판 입력)홑꺾쇠표(< >)

3)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저자의 표시

- 1)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논문저술의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등으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 2) 논문의 저술에 있어 복수의 저자들의 기여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공동저자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제7조 원고의 투고

- 1) 투고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학술지 발행일자에 따라 매년 8월 31일, 12월 31일로 정한다.
- 2) 투고논문의 투고는 홈페이지의 '온라인투고' 메뉴를 통해 제출하거나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shimhoon1901@gmail.com]
- 3) 투고를 진행하면서 학회와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해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연속투고 및 중복 투고 금지

- 1) 연속투고란 직전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가 다음에 발행되는 학술지에 연속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평성을 위해 학회의 기별 기고 요청 등을 제외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투고는 금지한다. 단, 복수의 저자 중의 한 사람이 연속투고 하는 경우, 반대로 단독 투고 이후에 복수의 저자들이 투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중복투고란 하나의 논문을 동일한 시기에 심사 및 발행이 진행되는 타 학회의 학회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가 밝혀진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논문을 반려하고, 향후 2년간 투고자격을 박탈한다.

제9조 저작권

심훈학보에 수록된 논문들의 저작권은 연구소에 있으며, 논문을 활용한 디지털 자료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한 권리도 연구소가 소유한다. 다만 수록된 논문을 저자의 출판물이나 다른 논문 등에 활용하는 경우 이를 승인한다.

제10조 이해상충 규정

논문 투고자는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 후라도 이해상충 관련 연구 부정이 확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투고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